



도민이 중심  
신뢰받는 의회

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4. 7. 15.(월) 10:00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4년 7월 3일
- 회부일자: 2024년 7월 4일

3. 제안이유

- 학교 신설과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(안 제2조)

- 1) 지방공무원 총수: 3,462명 → 3,480명 (+18명)
- 2)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 
각급학교: 3,118명 → 3,136명(+18명)

나.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 개정 (안 별표3)

- 1) 지방공무원 총계: 3,462명 → 3,480명 (+18명)
  - 일반직 계: 3,107명 → 3,125명 (+18명)
  - 5급 이하 소계: 3,067명 → 3,085명(+18명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<sup>1)</sup>, 제20조에<sup>2)</sup>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  
- 주요 내용으로 학교 신설과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무 학교의 교육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3,462명에서 3,480명으로 18명 증원하려는 것임

- 
- 1) 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  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  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- 2) 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  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  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-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  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  3.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- 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구분	정무직	일반직	연구직	교육전문직원	별정직	합계
현행	1	3,107	12	335	7	3,462
개정안	1	3,125	12	335	7	3,480
증감	-	+18	-	-	-	+18

○ 세부 증원 내역을 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8명을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설예정 학교의 설립사무를 위해 (가칭)오송2초 등 7개교에 16명, 중증장애인 직원이 근무하는 2개교(진흥초, 사직초)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자세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

연번	사업명	증원 인원	세부내역
1	(가칭)오송2초 [개교 '25.3]	2	· (배정 정원 5명) 교행6급 1, 교행7급 1, 교행8급 2, 시설관리 1 - (증원 2) 24.11. 교행 설립사무 2 / (재배치 3) 25.3. 교행 2, 시설관리 1
2	(가칭)오송2중 [개교 '25.3]	3	· (배정 정원 4명) 교행6급 1, 교행7급 1, 교행8급 1, 시설관리 - (증원 3) 24.11. 교행 설립사무 2, 25.3. 교행 1 / (재배치 1) 25.3. 시설관리 1
3	(가칭)동남중 [개교 '25.3]	3	· (배정 정원 4명) 교행6급 1, 교행7급 1, 교행 8급 1, 시설관리 1 - (증원 3) 24.11. 교행 설립사무 2, 25.3. 교행 1 / (재배치 1) 25.3. 시설관리 1
4	(가칭)단재고 [개교 '25.3]	2	· (배정 정원 3명) 교행6급 1, 교행8급 1, 시설관리 1 - (증원 2) 24.11. 교행 설립사무 2, (재배치 1) 25.3. 시설관리 1
5	(가칭)오송3초 [개교 '25.9]	2	· (배정 정원 5명) 교행6급 1, 교행7급 1, 교행8급 2, 시설관리 1 - (증원 2) 25.5. 교행 설립사무 2 / (재배치 3) 25.9. 교행 2, 시설관리 1
6	(가칭)화곡초 [개교 '25.9]	2	· (배정 정원 4명) 교행6급 1, 교행7급 1, 교행8급 1, 시설관리 1 - (증원 2) 25.5. 교행 설립사무 2 / (재배치 2) 25.9. 교행 1, 시설관리 1
7	(가칭)상당유 [개교 '26.3]	2	· (배정 정원 3명) 교행6급 1, 교행7급 1, 시설관리 1 - (증원 2) 25.11. 교행 설립사무 2 / (재배치 1) 26.3. 시설관리 1
8	중증장애인 근무 자원	2	- (증원 2) 24.9. 중증장애인 지원 인력(교행 8급 2) *진흥초, 사직초
	증원	18	* 신설학교 필요 인력 28명 / 증원 16명 / 재배치 12명 * 중증장애인 지원 인력 증원 2명

○ 직급별 증원 인원은 6급 8명, 7급 9명, 8급 1명이며 지방공무원 전체 인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범위 내<sup>아래 표 참조</sup>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

##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### 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전문경력관
비 율	1.5% 이내	8% 이내	31% 이내	40% 이내	19% 이상	0.5% 이내

- 6급 8명 증원 시 총 인원 758명 22% (758/3,480명)
- 7급 9명 증원 시 총 인원 1,145명 33% (1,145/3,480명)
- 8급 1명 증원 시 총 인원 1,061명 30% (1,061/3,480명)

- 또한, 일반직 정원 18명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2023년 집행을 94.74%에서 0.52% 증가한 96.52%로 총액인건비 교부액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므로 인건비 부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최근 10년<sup>2013~2023년</sup> 동안 학생 수는 205,298명에서 169,165명으로 36,133명이 지속적으로 감소<sup>연 3,613명</sup>하고 있는 반면, 직원 수는 최근 5년<sup>2019~2024년</sup> 동안 3,235명에서 3,480명으로 245명이 지속적으로 증가<sup>연 49명</sup>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업무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- 더불어, 신설 예정 학교의 필요 인력은 총 28명이지만 증원 인원은 16명으로 추가 필요 인력 재배치 12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
- 중증 장애인 직원 <sup>붙임1 참조</sup> 근무 지원을 위한 행정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약칭:장애인고용법)」 과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:장애인활동법)」 <sup>붙임2 참조</sup>에 따라

근로지원인 및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바, 지원 행정 인력 증원과 비교하여 장애인의 사회생활, 경제적 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추후 중증 장애인 직원 채용에 따른 학교 정원배치기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

## 붙임 1

### □ 정원 조례 증원 대상 중증장애 공무원 현황

순	소속기관	직급	현 부서 근무기간	장애 유형	보조 지원여부	인적사항
1	사직초 (교육행정 3명)	교육행정 8급	2년 7개월	지체 장애	근로지원인× 활동지원사○ (출퇴근 및 근무시간)	정규 임용 이후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이며, 신체 전부가 움직임이 어려움 (입으로 키보드 작성)
2	진흥초 (교육행정 3명)	교육행정 9급	4년 6개월	지체 장애	근로지원인× 활동지원사○ (출퇴근만)	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, 상체의 불편함으로 업무 수행이 매우 곤란함

※ 사직초 공무원의 경우, 고용노동부에서 매칭된 근로지원 인력이 없어 활동지원사가 업무 보조 중

## 붙임 2

### ○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(고용노동부)

- (19조의 2) **“근로지원인”** 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**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**
- (32조의 2)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장애인 **고용부담금을 납부**하여야 한다.

### ○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(보건복지부)

- (1조)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**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**을 규정

구분	근로지원인	활동지원사
관계법령 (소관부서)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(고용노동부)	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 (보건복지부)
지원(분야) 내용	<b>일상생활과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</b> 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지원 ※ 일상생활: 이동 및 식사 보조 ※ 부수적 업무: 전화연결, 서류넘김, 단순 문서 작업	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<b>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</b>
근무시간	<b>근무시간 내</b> 업무 보조(출퇴근 지원 불가)	<b>근무시간 외</b> 일상 지원(출퇴근 지원 가능)
신청방법(주체)	중증장애인이 <b>한국장애인고용공단</b> 에 신청	중증장애인이 <b>주민센터</b> 에 신청
기타사항	시간당 300원 본인부담금 발생	